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. 7. 24 선고 2018가단11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7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 경주시 D 전 498㎡ 중,
가.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0㎡ 지상 건물을
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10㎡ 지상 건물을
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경주시 D 전 498㎡의 소유자이고, 피고 B는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0㎡ 지상에,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0㎡ 지상에 각각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박은진

별지